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 부족분 해소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신설 〉
■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073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2024년 9월 19일 정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9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한 금액인 최소적립금의 부족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최소적립금 부족을 해소하는 기업이 매우 적어 기업의 부담도 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최소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호의2 신설 및 제48조제1항제2호 삭제).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미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안 제44조제1호의 2 신설 및 제48조제1항제2호 삭제).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44조(벌칙) ----- ----- ----- -----. ----- -----.
1. (생략) <u><신설></u>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u>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8조(과태료)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삭제>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② ③ (생략)	② ③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을 살펴보면, ①사용자가 퇴직연금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 책임으로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s)**, ②사용자 납입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고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③개인이 부담금 납입과 운용 책임을 모두 지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d**

Pension)로 구분 됨.¹⁾

<퇴직연금제도 개요>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퇴직연금제도
제도 개요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부담금을 사용자가 직접 운용 하여 근로자에게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급여 수준이 퇴직금과 동일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 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받는 제도 ※ 급여 수준이 운용 손익에 따라 변동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제도 + 개인이 노후 소득을 위해 적립할 수 있는 제도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		①퇴직급여가 발생한 근로자, ②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③공무원·자영업자 등 소득 이 있는자
규약	퇴직연금규약		불필요
운용(자산) 관리계약주체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		가입자와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부담	사용자		가입자
부담금납부	사용자		가입자
사외적립 부담금수준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가입자 재량
근로자추가납입	불가	가능	
퇴직급여형태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수령요건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 이상
퇴직급여수준	퇴직 시 평균임금 30일분 x 근속연수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 운용손익	적립금+ 운용손익
운용주체	사용자	근로자	가입자
운용위험부담	사용자	근로자	가입자
중도인출	불가	가능	
담보제공	50%까지 가능(주택 구입 등 특정한 사유)		
재정지원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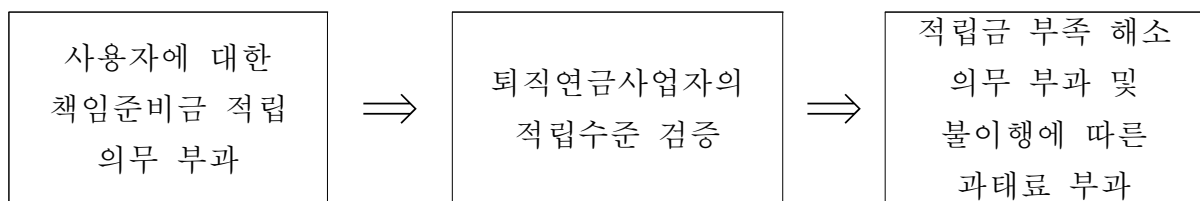
* 자료: 고용노동부

- 1) 현행법상 이와 별개로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가 있는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인 중소기업들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 퇴직금·퇴직연금제도와 비교할 때 근로복지공단¹⁾이 직접 기금운용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B형’)는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하여야 할 급여가 확정되어 있을 뿐 사용자의 납입 부담금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그 운용을 통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가 형성될 수 없다고 볼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려면 사용자의 급여 지급능력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인바,

현행법은 ①사용자에게 책임준비금을 적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②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책임준비금의 적립 수준을 검증하게 하며, ③그 결과에 따라 사용자에게 적립금 부족을 해소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사용자가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현행법상 DB형 설정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능력 확보 수단>



먼저 사용자의 책임준비금 적립의무를 살펴보면, DB형을 설정한 사용자는 ‘기준책임준비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0% 이상의 비율(100%)을 곱하여 산출한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할 의무가 있음.²⁾

2)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여기서 ‘기준책임준비금’은 매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①
예상퇴직급여액 및 부담금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 격차 또는 ②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의 퇴직급여 예상액 중 큰 금액인데,

DB형의 급여수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이 되어야 하므로³⁾ 통상적으로는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 이상으
로 최소적립금의 수준이 결정될 여지가 크다고 볼 것임.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수준 검증을 살펴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
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⁴⁾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사용자가 적립한 금액이 최소적립금을 충
족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되, 사용자가 적립한 금
액이 최소적립금에 미달한 경우 근로자대표⁵⁾에게도 이를 알려야 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
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5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 이상으
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
출) 영 제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삭제 / 2.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90
3. 2022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

3)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
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
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수준 검증에 따른 결과 사용자가 적립한 금액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1/3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할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불이행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⁶⁾

개정안은 적립의무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그 불이익의 수준을 상향(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함으로써 DB형 설정 사용자의 부담금 적립의무 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 곤란 방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임.

법규 위반행위에 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행정형벌을 부과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에 해당하고,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는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의 성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⁷⁾

6)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여야 한다.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적립금 부족의 판단기준 및 해소방안) ①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를 말한다.

② 사용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이 제1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담금 납입 등을 통해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

7) 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3헌바51 전원재판부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단순한 의무태만 내지 의무위반)로 보아 행정질서별인 과태료를 과할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금의 미지급, 퇴직연금 부담금의 미정산행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는 점⁸⁾을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체계·자구 측면을 살펴보면,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동일한 내용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없고 형사처벌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것인바,⁹⁾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경과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⁰⁾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형벌을 과할 경우 그 법정형의 형종과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당해 위반행위가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그르친 것이 아닌 한 그 처벌내용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그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

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3헌바60 전원재판부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결정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의 성격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그 범죄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8)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 4. (생략)

9)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10) 예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참고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수준 검증에서 최소적립금 95% 기준에 미달하여 사용자에게 부족분 해소 의무가 부여된 경우는 최소 56,195건(2023년)에서 최대 60,137건(2020년)으로 나타나고 있음.

<연도별 미적립 사업장 수 현황>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최소적립금의 95% 미달 사업장(규약 수)	60,137	57,782	59,525	56,195

* 최소적립금 미적립은 규약 단위로 판단하므로 퇴직연금규약 기준으로 작성(한 사업장에 복수의 퇴직연금규약이 존재 가능)

**자료: 고용노동부

최소적립금 적립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시행된 2022년 4월 이후 이에 대하여 1건의 과태료 부과(200만원)가 이루어졌음.

고용노동부는 ①체불 가능성(최소적립금 미달)을 이유로 퇴직급여 체불과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 ②과태료 도입 이후 적립금 부족분이 해소된 사례가 다수 있어 현행 규정의 효과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¹¹⁾ ③과도한 처벌규정은 DB형 도입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이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40

11) 최소적립금 미달 사업장('22년) 56,089개소 중 '23년에 14,821개소 해소 완료